주민세 법인균등분 과세 예고

○ 지방세정 업무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귀 법인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
○ 국세청 통보자료 및 지방소득세(법인세분 및 특별징수분), 주민세(재산분 및 종업원분) 등 귀 법인이 자진 신고한 자료를 토대로 조사한 결과, 지방세법 제75조[납세의무자] 규정에 따라 우리구 주민세 법인균등분 과세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미등록 등의 사유로 2011~2015년 주민세 법인균등분 중 일부가 과세 누락된 것으로 확인됩니다.

법 인 명	{{법인명}}
소명대상 사업장	{{사업장주소}}
누락연도	{{누락연도}} 년

○ 따라서 누락된 주민세 법인균등분을 2016년 7월 일괄 부과할 예정이므로 귀 법인이 2011~2015년 주민세 법인균등분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, 2016.7.8.까지 아래 관계법령에 따른 주민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※ 관계법령

지 방 세 법 제74조 제4호	"사업소"란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.
지 방 세 법 제75조 제1항	균등분의 납세의무자는 지방자치단체에 (중략) 사업소를 둔 법인(법인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법인격 없는 사단·재단 및 단체를 포함)(중략)으로 한다.

○ 문의처: 세무2과 지방소득세1팀(☎ 02-2286-5345~8)

2016. 6. .

성 동 구 청 장